



♣ 공지사항

1. 매년 실시하는 **건강검진**을 받으시고 결과지는 사무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. 상태변화기록지는 일주일간의 **어르신 상태를 자세히**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.
3. 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자에게 **사전 보고**해 주시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당일에 일정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시작 전에 보고하도록 합니다.
4. 어르신이 입/퇴원을 하시는 경우에는 **반드시** 사무실로 내용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♣ 11월 직원회의 및 교육 안내

1. 일시 : 2024년 11월 26일(화) 17:30 ~ 18:30
2. 장소 : 청주시 청원구 내덕로 35, 천사요양원 4층

직원회의는 근무하고 있는 전체 직원이 참석 대상입니다. 어르신과 보호자님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.



♣ 10월 직원회의 및 교육

<종사자 인권침해 대응지침>

- 폭언, 폭행, 상해의 의미와 종사자 및 기관의 대응방법
- 성희롱, 성폭력의 의미와 종사자 및 기관의 대응방법
- 급여 외 행위 제공 요구에 대한 대응절차
- 주요 인권침해 상황 대응방법

사무실 통화 가능 시간 **월~금(09:00~17:30)** 외에는 통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

☎043)254-1515

가정방문급여 부당청구 사례

부당사례	<p>A수급자의 방문요양 서비스 시간 중에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와 함께 병원을 방문하여 어르신이 진료를 받는 동안 요양보호사도 자신의 병원 진료를 함께 받았음.</p>
적발사유	<p>수급자의 서비스 제공 시간 중에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가 개인의 진료를 받는 것은 가정방문급여의 일반원칙을 위반한 것임.</p>
관련근거	<p>○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 (보건복지부고시제2021-324호(2021.12.27.)~제2023-289호(2023.12.29.))</p> <p>제15조(가정방문급여 일반원칙)</p> <p>①가정방문급여는 수급자의 가정(가정집 등 수급자의 사적인 공간)을 방문하여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수급자의 신체활동, 가사활동 또는 일상생활 지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병원동행, 식사준비를 위한 시장보기, 관공서 방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이 아닌 곳에서도 급여를 제공할 수 있으나, 수급자의 여행(수련회, 나들이 등) 또는 취미활동에 동행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② 가정방문급여는 해당 방문시간 동안 수급자 1인에 대하여 전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.</p>